

의안번호	2215299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6. 2. 20.
추계번호	25B706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,5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48조의7제2항)	15	15	15	15	15	75	15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7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(이하 “정보보호실태점검”이라 한다)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실태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(이하 “점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점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함(제2항) 1. 정보보호실태점검 대상 2. 정보보호실태점검 기준·방법 3.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실태점검 공표의 범위 4.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의 이행 내용, 실적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절성 5. 그 밖에 정보보호실태점검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						
1	안 제48조의7 (정보통신망연 결기기등에 관 한 실태점검 등) 신설	정보보호실태점검 (제1항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 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 통신망연결기기등¹⁾에 대한 정보보호실태점검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품목 및 수, 실태점검의 실시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 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[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품목 예시]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품목 예시</th></tr><tr><td>주택</td><td>월패드, 디지털도어록, 도어센서, 무선호출기, 무선 온습도 센서, 스마트홈 모바일 앱 등</td></tr><tr><td>가전</td><td>로봇청소기, 냉장고, 홈 네트워크 카메라, IoT 통신 모듈,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등</td></tr><tr><td>스마트 도시</td><td>전력측정기, 무선 소방 시스템, 실외공기질측정 기, 스마트센서, 전기자동차 충전기 콘센트 등</td></tr><tr><td>의료</td><td>체외용 인슐린주입기, 블루투스 온도 센서, IoT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 등</td></tr><tr><td>제조 생산</td><td>IoT 센서데이터 전송장치, 신재생자료취득장 치, 분산형전원 감시제어장치 등</td></tr><tr><td>통신</td><td>무선통신 단말기, IoT 리모컨, IoT 센서, 키 오스크, 홈 CCTV 등</td></tr><tr><td>교통</td><td>차량번호 인식 시스템, 딥러닝 기반 영상 분 석 장치, 스마트위치 앱 등</td></tr><tr><td>금융</td><td>카드단말기(POS), 키오스크 등</td></tr></table> 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※[참고자료] ‘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’ 참조	구 분	품목 예시	주택	월패드, 디지털도어록, 도어센서, 무선호출기, 무선 온습도 센서, 스마트홈 모바일 앱 등	가전	로봇청소기, 냉장고, 홈 네트워크 카메라, IoT 통신 모듈,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등	스마트 도시	전력측정기, 무선 소방 시스템, 실외공기질측정 기, 스마트센서, 전기자동차 충전기 콘센트 등	의료	체외용 인슐린주입기, 블루투스 온도 센서, IoT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 등	제조 생산	IoT 센서데이터 전송장치, 신재생자료취득장 치, 분산형전원 감시제어장치 등	통신	무선통신 단말기, IoT 리모컨, IoT 센서, 키 오스크, 홈 CCTV 등	교통	차량번호 인식 시스템, 딥러닝 기반 영상 분 석 장치, 스마트위치 앱 등	금융	카드단말기(POS), 키오스크 등
		구 분	품목 예시																			
주택	월패드, 디지털도어록, 도어센서, 무선호출기, 무선 온습도 센서, 스마트홈 모바일 앱 등																					
가전	로봇청소기, 냉장고, 홈 네트워크 카메라, IoT 통신 모듈,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등																					
스마트 도시	전력측정기, 무선 소방 시스템, 실외공기질측정 기, 스마트센서, 전기자동차 충전기 콘센트 등																					
의료	체외용 인슐린주입기, 블루투스 온도 센서, IoT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 등																					
제조 생산	IoT 센서데이터 전송장치, 신재생자료취득장 치, 분산형전원 감시제어장치 등																					
통신	무선통신 단말기, IoT 리모컨, IoT 센서, 키 오스크, 홈 CCTV 등																					
교통	차량번호 인식 시스템, 딥러닝 기반 영상 분 석 장치, 스마트위치 앱 등																					
금융	카드단말기(POS), 키오스크 등																					
	정보통신망연결기 기등 점검심의위 원회(제2항)	○	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																			

1)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
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·수신할 수 있는 기기·설비·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
·설비·장비(이하 “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”이라 한다)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8조의7제2항)
 - 개정안은 정보보호실태점검의 대상·기준·방법, 공표의 범위, 개선권고의 이행 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,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(위원 수) 개정안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 10명(위원장 1명, 위원 9명)의 민간 위원(위원장 1명, 위원 9명)으로 구성

[표 2]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(안)

인원 수	위원의 신분 또는 요건	비 고
10명 (위원장 1명, 위원 9명)	정보통신분야 민간 전문가	모든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(회의개최 횟수) 회의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위원회²⁾의 회의개최 횟수(2025년 기준 5회 개최)를 참고하여 연 5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2) 「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」 제28조(인증위원회의 운영)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결과의 적합여부
2. 인증기준, 인증대상, 인증범위 등의 적합여부
3. 인증의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**(회의참석 사례금)**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(참석수당 20만원, 안건검토비 10만원)³⁾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**(추계 결과)**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,5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10	10	10	10	10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5	5	5	5	5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30	30	30	30	3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15	15	15	15	15	75	15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3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

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의3])

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(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)

1. 가전 분야: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,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·설비·장비
2. 교통 분야: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·설비·장비
가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
나.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
라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
3. 금융 분야: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
4. 스마트도시 분야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·설비·장비
5. 의료 분야: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·설비·장비
6. 제조·생산 분야: 제품의 제조·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·점검·측정·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·설비·장비
7. 주택 분야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·설비·장비
8. 통신 분야: 「전파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